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15 발의연월일: 2025. 2. 5.

발 의 자:김정재·박충권·김성원

우재준 • 박덕흠 • 고동진

정점식 · 김소희 · 이만희

최수진 · 이상휘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임.

현행법상 지하자원이나 발전용수, 지하수 같은 특정자원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저광물자원의 경우에는 과세대 상과 과세표준, 표준세율 등을 정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더구나 해저광물자원은 해당 해역에서 상당기간 개발이 지속(탐사권 10년, 채취권 30년)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어로 제한 등 주변 지역의 개발제한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후생손실과 해당 해역의 환경 파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과 대책 마련을 위하

여 별도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서도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절실함.

이에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자가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의 세율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하고자 하며, 특히 영해의 경우에는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우에는 1996년부터 시행되어 2017년에 개정된「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는 천연자원 채취와 같은 경제적 개발의 경우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장소 및 채취관이 인입되는 장소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납세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2항제1호라목, 제143조제1호라목, 제144조제1호라목 및 제146조제1항제4호 신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2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해저광물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해저광물자원"이라 한다)

제143조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해저광물자원: 해저광물자원을 채취(採取)하는 자제144조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해저광물자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소

- 1)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장소가 영해에 위치하는 경우: 해 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장소의 소재지. 다만,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장소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 는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장소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 2)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장소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 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 에 위치하는 경우: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장소와 해저광물 자원의 채취관이 인입되는 장소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장소의 소재지

제14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저광물자원: 채취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채취하는 해저광물자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0호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해저광물자원: 해저광물자원을 채취(採取)하는 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2조(과세대상) ① (생 략)	제142조(과세대상) ① (현행과 같
	<u></u> 이 교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	②
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1
다음 각 목의 것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u><신 설></u>	라. 해저광물자원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장에서 "해저광물자원"
	<u>이라 한다)</u>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	제143조(납세의무자)
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1
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u><신 설></u>	라. 해저광물자원: 해저광물
	자원을 채취(採取)하는 자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	제144조(납세지)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 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부과한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1. ------다음 각 목의 납세지 가. ~ 다. (생 략) <신 설>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해저광물자원: 다음의 구 분에 따른 장소

- 1)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 는 장소가 영해에 위치 하는 경우: 해저광물자원 을 채취하는 장소의 소 재지. 다만, 해저광물자 원을 채취하는 장소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 는 장소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 2)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 는 장소가 「배타적 경 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위치하는 경우: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

2. · 3. (생략)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 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u><신 설></u>

② ~ ⑤ (생략)

는 장소와 해저광물자원 의 채취관이 인입되는 장소 등을 고려하여 행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소재지

2. · 3. (현행과 같음)

- 1. ~ 3. (현행과 같음)
- 4. 해저광물자원: 채취된 광물 가액의 1천분의 10
- ② ~ ⑤ (현행과 같음)